

# ‘가금 입식 사전 신고’제도 의무화

’20.2.28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시행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닭, 오리를 농장에 입식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입식하려는 가금의 종류와 규모, 입식 예정일 등을 사전 신고하는 제도가 의무화된다.

## ◎ 「가축전염병 예방법」 과 그 시행령 개정안

- (법) 사육기간이 비교적 짧은 닭, 오리농가에 대한 정확한 사육 현황 파악을 통한 효과적인 역학조사와 방역대책 수립을 위해
  - '19년 8월 27일에 “가축 입식 사전 신고\*” 제도가 새로이 도입(시행일자: '20년 2월 28일)

### \* '19.8.2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입식 사전신고 관련 개정 내용

(신설) 제15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신고) 닭, 오리 등의 가축 소유자등은 해당 가축을 농장에 입식(入殖)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가축의 출하 부화장 등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60조(과태료)제1항제4호의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을 입식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시행령) 닭, 오리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입식한 농장주 등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
  - 과태료 부과기준 :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사항과 방법·절차 등 마련
  - 농장내로 닭, 오리를 입식하려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입식 사전 신고서”(별지)를 작성하여 입식 7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 「축산법」에 따라 사육시설이 50㎡ 초과하여 허가를 받은 닭, 오리 사육업이 법 적용대상
- \*\* 사육시설이 50㎡ 이하의 소규모 농가는 법 적용 대상은 아니나 점차 확대 적용 검토

√ (신고사항) 입식 가족의 종류, 입식 규모, 일령(日齡) 및 예정일, 현재 사육 가족의 마리수, 사육시설 규모 및 사육 형태, 출하 예정일, 입식 가족을 출하하는 부화장(농장), 축산계열 회사업자 정보(계약 사육 농가에 한함),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 여부 등

**참고 「가족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조 항	주요 개정 내용													
가족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p>○ 가족전염병예방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족을 입식한 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20%;">위반행위</th> <th rowspan="2" style="width: 20%;">근거법조문</th>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과태료 부과금액</th> </tr> <tr> <th style="width: 10%;">1회 위반</th> <th style="width: 10%;">2회 위반</th> <th style="width: 10%;">3회이상 위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font-size: small;">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을 입식한 경우 &lt;신설&gt;</td> <td style="font-size: small;">법 제60조 제1항제4호의2</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td> </tr> </tbody> </table>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이상 위반	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을 입식한 경우 <신설>	법 제60조 제1항제4호의2	100	200	500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이상 위반											
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을 입식한 경우 <신설>	법 제60조 제1항제4호의2	100	200	500											
가족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가족의 입식사전신고)	<p>○ 입식사전신고 대상 축종 「축산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축업 및 같은 항제4호에 따른 가족사육업에서 사육 하는 닭 또는 오리</p> <p>○ 입식사전 신고 사항, 절차 및 방법 - (신고사항) 입식 가족의 종류, 입식 규모, 일령(日齡) 및 예정일, 현재 사육 가족의 마리수, 사육시설 규모 및 사육 형태, 출하 예정일, 입식 가족 출하 부화장(농장), 축산계열 회사업자 정보(계약 사육 농가에 한함),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 여부 등</p> <p>- (신고절차) 입식 7일 전까지 “입식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p>													
	[별표1의8]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기준” [시행일: '20.5.28]	<p>○ “식용란 선별포장업자”가 갖추어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을 새로 마련(안 별표1의8,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기준)</p> <p>○ 해당 시설 출·입구에 차량 세차·소독 시설 설치, 농장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한 ‘출입기록부’와 ‘소독실시기록부’를 구비</p> <p>○ 농장내 시설을 이용하여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단방역을 위해 그 건물 출입구를 사육시설 출입구와 서로 분리</p>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20. 2. 28.)

## 가축(닭·오리)의 입식 사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소유자·관리자명		농장명
	전화번호		
	주소		
신고 내용	입식하려는 가축의 종류 육계[ ], 종계[ ], 산란계[ ], 토종닭[ ], 육용오리[ ], 종오리[ ], 혼합[ ]		
	현재의 가축사육 규모		입식 규모
	입식 일령(日齡)		입식 예정일
	가축사육시설의 규모 동, m <sup>2</sup>	사육 형태 축사[ ], 방목[ ], 축사 및 방목 혼합[ ]	
	가축의 출하 예정일		
	입식하려는 가축의 출하 부화장 또는 농장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계약사육능가만 해당)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 소독설비[ ], 방역시설[ ], 정상 작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서류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위 신고인은 개인정보와 농장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방역 지원 및 가축의 이력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